-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2024. 5

관계부처 합동

목차

1.	개요 ····································	2
2.	「관광진흥법」개정 주요 내용	3
3.	카지노업 유사행위 정의	4
4.	홀덤펍 운영 방향	6
5.	예상 질문	8

Ⅰ. 개요

□ 목적

- **홀덤펍*에서의 불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불법 홀덤펍을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관광진흥법 개정)가 마련
- *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카지노업 유사행위 성립요건, 합법적인 홀덤펍(홀덤대회)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합법 홀덤펍 유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단속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광진흥법」 개정 내용

- '카지노업 유사행위' 개념을 신설하여,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관광 진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 ※ 법 개정으로 '카지노업 유시행위'가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불법시행산업'에 포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및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으로써 단속의 실효성 확보
-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도박장소개설죄** 보다 **강하게 규정**하여 홀덤펍 내 불법행위 방지에 기여

개 정 전	개 정 후		
<u><신 설></u>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 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u> <u>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81조(벌칙) <u>①</u> <u>7년</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u> 위반 한 <u>자</u>	2. 제26조의2를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u><신 설></u>	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Ⅱ. 개정 주요 내용

◆ 카지노업 유사행위: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구 분	기 존	「관광진홍법」개정 후
법 률	○ 형법(도박장소개설죄) ○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시항)	 형법(도박장소개설죄)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시항) 관광진흥법 (카지노업 유시행위 금지)
처 벌	 형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광진홍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감시 여부	X	감시 대상에 포함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신고 포상금 지급	X	최대 5천만원

Ⅲ. 카지노업 유사행위의 의미

- ◆ 카지노업 유사행위: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 ※ 관계 법령·판례에 따를 때,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됨
 - **1**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카지노업 경영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 2 영리 목적(사업장을 운영하여 재산상 작간접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으로
 - 3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 영업(게임) 종류를 제공하여
 - 4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

①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

⇒ 카지노사업자란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해 관광진흥법·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에 해당함

❷ 영리 목적

- ⇒ 영리 목적이란 사업장 운영을 통해 **재산상 직·간접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음
- ⇒ 판례에 따르면*, 손님들이 적립 등의 방식으로 해당 사업자의 일반음식점을
 다시 찾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영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 특히 적립한 포인트는 당일에 사용할 수 없어 손님들이 다시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오도록 유도하였는 바,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이 있음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8.4.27. 선고 2017고정861)

❸ 「관광진흥법」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제공

- ※ 「관광진흥법」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8과 같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

20202 1011 12						
	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다이스(Dice, Craps)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 사이(Tai Sai)			
데이브케이	사. 키노(Keno)	아. 빅 휠(Big Wheel)	자. 빠이 까우(Pai Cow)			
테이블게임	차. 판 탄(Fan Tan)	카. 조커 세븐(Joker Seven)	타.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파 트란타 콰란티(Trent Et Quarante)	하. 프렌치 볼(French Boule)	거. 차카락(Chuck - A - Luck)			
	너. 빙고(Bingo)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 워(Casino War)			
전자테이블		사도				
게임		상 동				
머신게임	신게임 가. 슬롯머신(Slot Machine) 나. 비디오게임(Video Game)					

- * 홀덤펍에서 제공되는 텍사스홀덤 등은 포커의 한 종류로서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함
- ⇒ 카지노업의 영업(게임) 종류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규정하는 룰렛·블랙잭·다이스·포커·바카라 등 18종의 **테이블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슬롯머신·비디오게임 2종의 머신게임을 의미
- ⇒ 법령 해석*에 따르면, 규칙이 일부 변형된 게임을 제공하더라도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할 수 있음
 - *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속하는 게임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규칙이 일부 변형된 게임이더라도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

◆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 ⇒ '재산상의 이익'이란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
- ⇒ 판례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재산상의 가치가 인정됨
 - *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따거나 잃게 되는 칩은 단순한 게임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정량 이상 모였을 때 주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재물로서의 가치를 갖는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 2018.4.27. 선고 2017고정861)

Ⅳ. 홀덤펍 및 홀덤대회 운영 방향

< 합법 홀덤펍·홀덤대회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

- 게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환전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포인트·시드권** 등이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되지 않고 게임 참여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특히 시드권의 경우 이를 획득한 우승자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배부 된다면, 불특정 사인 간 금전거래가 가능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음
- **홀덤대회의 상금이나 운영비**가 주최자 자체 조달(후원 등)이 아닌 참여자의 참가비에서 비롯된다면, 게임을 통해 게임 참여자들 간 재산상의 이익·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음
- ※ 아래 사항은 불법 운영의 예시를 나열한 것으로서, 열거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안별 카지노업 유사행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불법 영업에 해당할 수 있음

□ (예시1) 불법 시드권 발행·배부

- 게임을 통해 획득하였으나 현금·현물 등으로 교환 가능한 시드권
- 시드권을 획득한 본인을 식별할 수 없는 시드권

□ (예시2) 불법 포인트 지급

- o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 주류·음식 등 현물 구입,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 (예시3) 불법 홀덤대회 개최

- 참여자들로부터 **대회 참가비를 걷어** 그 **참가비를 원천으로**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 * (대법 2001도5802) 고스톱대회의 입상자들이 지급 받기로 한 상금은 참가자들의 참가비 총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으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상금의 주요한 원천이 참가비에 있고, 우연의 결과에 의해 참가비 획득이 정해지는 이상 '도박'에 해당한다.
-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는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 *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641) 도박은 참가자들이 거는 재물과 득실을 다투는 재물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바, ...(중략)... 참가비가 상금의 재원이 되지 않았더라도 위 참가비는 참가자들이 게임을 위해 건 재물에 해당한다.

V. Q&A

- Q. 금전거래가 없는 게임 자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전거래(식음료·경품 제공, 환전행위 등)가 포함되지 않는 게임 제공은 가능합니다.
- Q. 딜러, 테이블, 칩 등 관련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홀덤게임 제공은 가능한지?
 - 게임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손실, 즉 **일체의 금전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게임 제공은 가능합니다.
- Q.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는 홀덤펍 등은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지?
 - 홀덤게임 등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게임은 사행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이에 홀덤게임 등을 제공하는 업소에서 **금전적 거래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 ※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 추진 중이며 '24년 5월 중 시행 예정(여성가족부)

O.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지?

- 게임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시드권 제공은 가능합니다.
- 다만, 어떤 형태로든 시드권이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되는 경우에는 금전거래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당 시드권 제공 시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을 제공할 경우, 불특정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참가자들 간 금전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자에게 수수료 등 중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 참가자들이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였으며, 게임을 하기 위해 해당 일반음식점을 찾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영리 목적성이 인정되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홀덤펍 사업자가 아닌, 홀덤펍 이용자도 처벌되는지?

-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 현금 등으로 교환한 홀덤펍 이용자의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 목격 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 증거를 갖추어 **경찰청(112)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1855-0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